〔별지 제4호 서식〕

**<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(제12조 관련) >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**  삼성SDI(주) 공동훈련센타 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라 한다)와 ( ) (이하,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「고용보험법」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」(이하 “컨소시엄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  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**제2조(기관의 역할)**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   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  2.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․운영 등 지원  3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, 컨소시엄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.  **제3조(훈련비용에 관한 약정)** ① **(사업주훈련 환급방식)**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 충당한다.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20조에 따라 지원받  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  ②**(공동훈련비 방식)**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의 비용을 지원 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일부를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 교육훈련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다.  1. 지원한도액이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협약기업: 100분의 \_\_0\_  2. 1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약기업: 100분의 \_0\_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  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본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2항에 따른 약정은 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  ④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 경우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  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  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 **제4조(성실의무)**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 **제5조(협약기간)**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컨소시엄 사업 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  된 것으로 본다. 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  2023 년 01 월 01 일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(공동훈련센터)** | | **(참여기관)** | | | 삼성SDI(주) | |  | | | **주 소 :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로 163** |  | **주 소 :** |  | | | **대표이사 : 최 윤 호** | **(인)** | **대표자 :** | **(인)** | |   **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**  ※ 첨부서류 : 1.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 2. (제3조 제2항의 공동훈련비 방식)지원한도액 차감동의서 1부 |

【 첨부 1 】

**<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>**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| | | | | |
| 회사명 |  | | | 대표자명 |  |
| 주소(본사) | 우편번호( - ) | | | | |
| 업 태 |  | 업 종 |  | 상시근로자수 |  |
| 담당자 | 성 명 |  | | HRD부서명 |  |
| 전화번호 | 사무실:  휴대폰: | | FAX |  |
| 전자우편 주소 |  | | 홈페이지 주소 |  |
| 고용보험관리번호 | |  | | 사업자  등록번호 |  |
| 【 기타 사항 】 | | | | | |

첨부 2 】

**< 지원한도액 차감동의서(공동훈련비 방식) >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지원한도액 차감동의서**  ( ) (이하,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삼성SDI(주) 공동훈련센타 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라 한다)과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」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동의한다.  1.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액의 일부를 차감한다.  2. 당해 연도에 협약을 해지하더라도 협약서 제3조제3항에 따라, 지원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한다.  3. 위 사항을 바탕으로 협약 세부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.  ○ 해당 사업연도 : 2023년 12월 31일  ○ 공동훈련센터와의 약정 비율 : 0%   |  |  | | --- | --- | |  | | | **주 소 :** |  | | **기관명 :** | **(직인)** | |  |  | |